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족 대한민국
배포일시	2020. 9. 10. (목) 09:00	담당부서	원산지지원담당관실
담당과장	임현철 042-481-3220	담당자	민병수 042-481-3214

**터키 원산지검증 급증에 신속대응으로 성과**  
- 상반기 197건에서 7~8월 18건으로 월평균 검증 대폭 감소 -

- 한-터키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해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이 올해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이에 적극 대응한 결과 7월부터 점차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원산지검증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증명서 진위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출기업들은 입증자료 준비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 투입으로 큰 부담을 겪게 된다.
- 관세청은 9월 10일(목) 터키에 수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대응전략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해 이같이 밝히고 터키 수출검증 동향과 업체의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이 밝힌 터키 관세당국의 올해 상반기 원산지검증 요청은 1,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 동기 73건(27개사) 대비 1,518% 증가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 검증 대상을 산업별로 보면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이 891건(75%)으로 비중이 높았다.
- 요청 사유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72%)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급증한 터키의 검증요청에 대응해 관세청은 신속한 검증 착수,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시행했다.
  - 또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 아울러 관세청은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 이러한 노력 결과, 터키의 검증요청은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 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붙임1)’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 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관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1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 안내문

-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한-터키 FTA」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특히, 화학제품, 섬유제품, 플라스틱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에 「한-터키 FTA」 주요 원산지 위반 사례별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수출물품 원산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한-터키 FTA는 원산지 증명을 수출자 스스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서명하는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 방식 채택

< 원산지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sup>①</sup> preferential origin.

.....<sup>②</sup>  
(Place and date)

.....<sup>③</sup>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①란 : '제품의 원산지를 작성 (예 : KR, KOREA)
- ②란 : '원산지신고서 작성장소와 작성일자'를 작성
  - ※ 해당 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작성생략 가능 (해당서류에 장소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다른 경우에는 작성해야 함)
- ③란 : '수출자의 서명과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 주요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1	<p>협정의 비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p> <p>☞ [주의사항]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협정문 제27조)하나,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p> <p>※ (사례) 한국 수출자는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정하게 작성했음에도, 제3국 소재 판매자는 자신이 발행한 상업송장(Invoice)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되어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p>
2	<p>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p> <p>☞ [주의사항]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합니다. (2번 사례와 동일)</p> <p>※ (사례) 수출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신고서 작성을 요청하여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수출자가 아닌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p>
3	<p>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p> <p>☞ [주의사항]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p> <p>※ (사례) 한국 수출자 D社は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하면서 한-EU FTA에 따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한-터키 FTA에는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 010-19-123456)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p>

4	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p>☞ <b>[주의사항]</b> 원산지신고서는 <b>재사용이 불가</b>하며, <b>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b>해야 합니다.</p>	

5	원산지신고서가 <b>협정에서 요구한 방식</b> 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p>☞ <b>[주의사항]</b>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b>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b>으로써 작성하고, <b>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b>이 포함되어야 하며, <b>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안 됩니다.</b></p>	

6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p>☞ <b>[주의사항]</b>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b>비원산지 제품은</b>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b>구분·표기*</b> 하여야 합니다.</p>																															
<p>&lt; 예시 1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Item #</th> <th>Product Description</th> <th>Preference</th> <th>Quantity</th> <th>Unit Price</th> <th>Amount</th> </tr> </thead> <tbody> <tr> <td>0452</td> <td>Polarizing microscopes</td> <td>P</td> <td>30</td> <td>400</td> <td>12,000</td> </tr> <tr> <td>0468</td> <td>Black Pins</td> <td>P</td> <td>20</td> <td>300</td> <td>6,000</td> </tr> <tr> <td>0528</td> <td>Led Lamp</td> <td>*</td> <td>50</td> <td>800</td> <td>40,000</td> </tr> <tr> <td>0541</td> <td>Image Projectors</td> <td>P</td> <td>10</td> <td>700</td> <td>7,000</td> </tr> </tbody> </table> <p>P : Preferential Origin(KOREA) * : No Preferential Origin.</p>		Item #	Product Description	Preference	Quantity	Unit Price	Amount	0452	Polarizing microscopes	P	30	400	12,000	0468	Black Pins	P	20	300	6,000	0528	Led Lamp	*	50	800	40,000	0541	Image Projectors	P	10	700	7,000
Item #	Product Description	Preference	Quantity	Unit Price	Amount																										
0452	Polarizing microscopes	P	30	400	12,000																										
0468	Black Pins	P	20	300	6,000																										
0528	Led Lamp	*	50	800	40,000																										
0541	Image Projectors	P	10	700	7,000																										
<p>&lt; 예시 2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Item #</th> <th>Product Description</th> <th>Origin</th> <th>Quantity</th> <th>Unit Price</th> <th>Amount</th> </tr> </thead> <tbody> <tr> <td>0452</td> <td>Polarizing microscopes</td> <td>Korea</td> <td>30</td> <td>400</td> <td>12,000</td> </tr> <tr> <td>0468</td> <td>Black Pins</td> <td>Korea</td> <td>20</td> <td>300</td> <td>6,000</td> </tr> <tr> <td>0528</td> <td>Led Lamp</td> <td>China</td> <td>50</td> <td>800</td> <td>40,000</td> </tr> <tr> <td>0541</td> <td>Image Projectors</td> <td>Korea</td> <td>10</td> <td>700</td> <td>7,000</td> </tr> </tbody> </table>		Item #	Product Description	Origin	Quantity	Unit Price	Amount	0452	Polarizing microscopes	Korea	30	400	12,000	0468	Black Pins	Korea	20	300	6,000	0528	Led Lamp	China	50	800	40,000	0541	Image Projectors	Korea	10	700	7,000
Item #	Product Description	Origin	Quantity	Unit Price	Amount																										
0452	Polarizing microscopes	Korea	30	400	12,000																										
0468	Black Pins	Korea	20	300	6,000																										
0528	Led Lamp	China	50	800	40,000																										
0541	Image Projectors	Korea	10	700	7,000																										
<p>※ (사례) 한국 수출자가 생산한 원산지 품목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품목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 ⇒ 비원산지 물품을 구분·기재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p>																															

## 붙임2 해외 통관애로 발생 시 연락처(수출입기업지원센터)

담당 부서	연락처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631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71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51
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81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1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 031-8504-7020